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26

2024/7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희·황수연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7)

Contents

국제법원

유럽인권재판소(ECtHR) 2

ECtHR 유럽인권재판소, 첫 기후변화에 대한 판결 발표

국제기구/ 국제규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5

UNFCCC '강화된 투명성 체계'를 위한 온라인 추적 시스템 도입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7

CLCS 필리핀과 베트남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 확장 정보 제출

지역별 동향

아시아 13

중국 중국 해경, '해경기구 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일본 일본, 멸종위기 참고래 59마리 포획 계획 승인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인권재판소, 첫 기후변화에 대한 판결 발표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전 세계 국내 및 지역 법원에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3년 기후변화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변화 소송 건수는 2017년 884건에서 2023년에는 2,1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국제사회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각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각 국가의 책임과 의무 범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미주 인권법원과 유럽인권법원(ECtHR)과 같이 지역인권법원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소송의 인권법적 접근의 효과와 한계가 주목된다.

그림 1. 관할권별 기후소송 현황(2022.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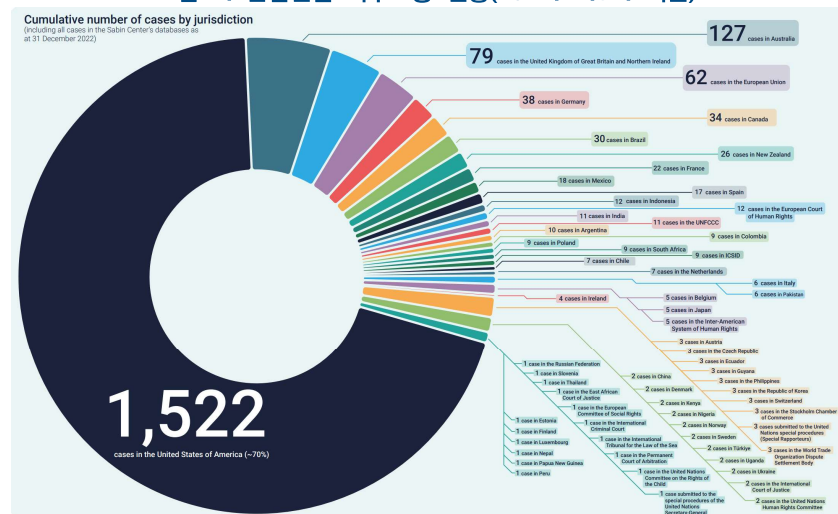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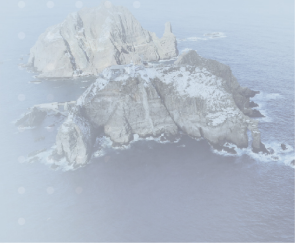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사진 출처: 유엔환경계획

지난 4월 9일 유럽인권법원에서는 첫 기후변화 관련 소송 3건¹⁾에 대한 판결 결과를 공개했다. 이 중 2건은 기각시켰으며, 나머지 1건은 원고의 승소로 결론 났다. 모두 3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Duarte Agostinho 사건에서는 국내 구제절차 소진과 역외적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KlimaSeniorinnen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

1) ①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이하, KlimaSeniorinnen 사건)
② Carême v. France ③ Duarte Agostinho v. Portug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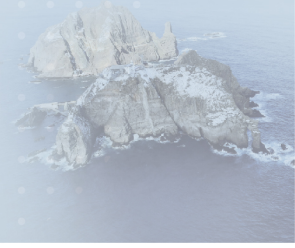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ECHR) 제2조(생명권)의 위반은 없었지만 제8조(사생활 및 가정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는 위반되었다고 판시하여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3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후 피해에 대해 인권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데 있어 특별한 전환점이 되어주지는 못했다는 평가이다.

역외적용의 문제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으로 언급되는 것은 Duarte Agostinho 사건 결정에서 역외적용 문제를 다룬 부분이다. 동 사건은 포르투갈 거주자들이 포르투갈과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신청자들이 겪은 기후 관련 피해에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여하였기 때문에 역외 관할권이 있는지 검토해야 했다. 재판소는 한 국가의 역외 관할권 판단 방식으로 3가지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델에 부합되는 요건이 없는 경우 ‘특별한 특성(special features)’에 의해 관할권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한 인정하였다. 재판소는 기후변화가 그 ‘특별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관할권을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고 판시했다. 예컨대, 관할권을 설립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이고 명확한 방식은 피해 발생원에 대한 통제라는 틀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 결과로 초래되는 예측 불가능성을 지지할 수가 없고 이는 대부분의 역외 관할권에 대한 제한요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대했다.

NGO의 지위와 피해자 신분의 문제

KlimaSeniorinnen 사건은 4명의 개인과 스위스에 거주하는 노인 여성들을 대표하는 NGO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각 개인들의 권리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신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소는 기후변화 사건에서는 협약상 민중 소송(actio popularis)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며, 그 기준으로는 (가)개인이 노출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가 높아야 한다, 즉,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의해 개인이 받는 영향의 수준이 상당해야 하고 (나) 피해를 완화시킬 합리적인 대책이 불충분하거나 부재한 경우에 의해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긴급해야 한다. 이는 재판소가 너무 낮은 기준을 설정하면 제한하는 기준으로서의 피해자 신분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재판소는 KlimmaSeniorinnen 단체를 피해자 신분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명시하였다. 그 기준으로 우선, 해당 NGO는 해당 관할권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하며, 회원들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영향을 받은 개인들을 대신할 자격과 대표성이 진정으로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번 KlimmaSeniorinnen 사건에서처럼 각 개인이 피해자 신분은 없어도 단체에게는 피해자 신분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개인 피해자 신분 요건 기준을 보완한다.

협약 상 영토 범위에 대한 협의적 적용 방식에 따르면, 남반구 저개발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소는 거의 제외되며, 피해자 신분에 대해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합치면 유럽인권제도를 통해 기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기후 소송이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 신청자가 감축조치를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의 관할권 내에 거주해야 하고, 그 신청자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야 하며, 만약 NGO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해당 NGO를 설립하는 절차가 용이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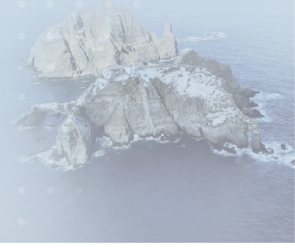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2. 유럽인권재판소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사건 심리



그림 출처: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출처 : [1] Ejiltalk(2024.5.2.), Priorities for Climate Litigation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ttps://www.ejiltalk.org/priorities-for-climate-litigation-at-the-european-court-of-human-rights/>(검색일: 2024.5.10.)

[2] UNEP(2023),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전문연구원 정현욱

UNFCCC, ‘강화된 투명성 체계’를 위한 온라인 추적 시스템 도입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6월 28일에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를 위한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목록, 기후행동 계획, 성과 및 지원 등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다. 이 시스템에는 사용자 매뉴얼, 기술 가이드,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s)뿐만 아니라 기술 문제 보고 포털이 포함되어 있어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 추적하는 데이터는 UNFCCC 당사국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최초의 ‘격년 이행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이기도 하다.

그림 3. ETF 보고 중 하나인 ‘국가인벤토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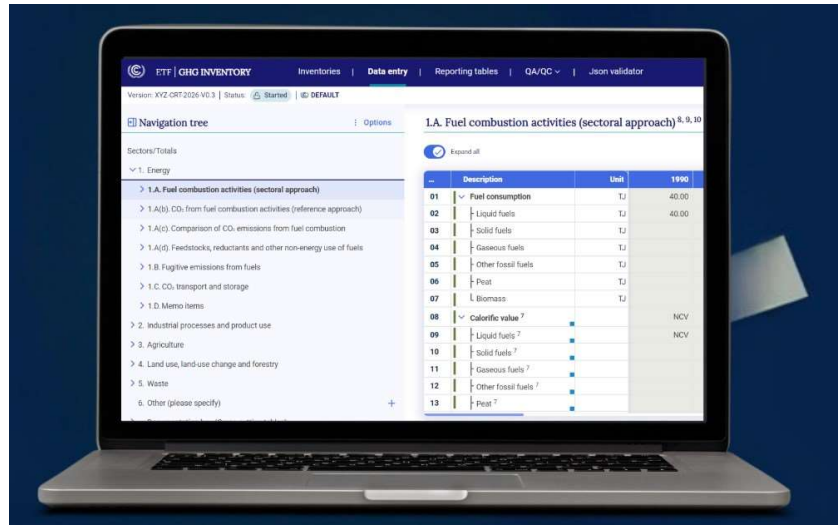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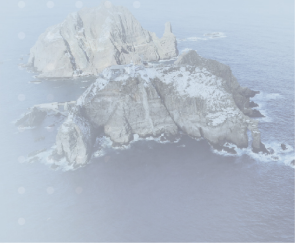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출처: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ETF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행동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이행 점검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파리협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투명성’은 △온실가스 배출의 투명성,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 설정의 투명성, △이행의 투명성, △NDC 달성 여부 공개의 투명성 등을 의미한다. 파리협정 당사국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와 ‘격년 이행 투명성 보고서’ 등의 보고 자료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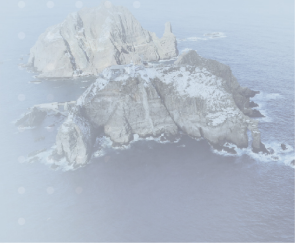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UNFCCC 사무국은 이번에 도입된 온라인 추적 시스템이 기후 정책과 NDC 계획을 수립하는 각국 정부에 더욱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온라인 도구를 통해 각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통합을 더욱 간소하고 일관된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할 수 있으므로, 기후 진전을 평가하고 자원 및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한편, 각국이 기후 보고를 작성하고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장점이 분명하지만, 개도국들은 보고서 준비와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 활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데이터를 수집·관리·분석하는 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UNFCCC 사무국은 개도국의 투명성 제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실무자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은 “각국이 기후 보고를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보고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통해 더 배우고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이 투명성 제고, 개도국에 대한 기후 기술 지원 강화 등 세부적인 사항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기후기술의 발전, 사회경제적·환경적 효과성 제고,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등 다차원적이고 실용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1] UNFCCC(2024.7.1.), Launch of New Climate Reporting Tools for Enhanced Transparency, <https://unfccc.int/news/launch-of-new-climate-reporting-tools-for-enhanced-transparency>
 [2]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ETF Reporting Tools,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ransparency-and-reporting/reporting-and-review/transparency-data-and-tools/etf-reporting-tools>
 [3] 오채운 외(2018),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체계와 기술개발 및 이전 지원, 녹색기술센터(GTC)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전문연구원 황수연

필리핀과 베트남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 확장 정보 제출

2024년 6월 14일, 필리핀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76조 8항2)에 따라 서팔라완 지역(the West Palawan Region)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에 대한 정보를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위원회 절차 규칙에 따라 해당 부분 제출문서의 요약본을 모든 유엔 회원국과 협약 당사국에 통보했다. 필리핀의 부분 제출에 대한 심의는 제63차 대륙붕한계위원회 회의(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뉴욕) 임시 안건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제63차 회의에서 제출 의견을 심의하고 협약 제76조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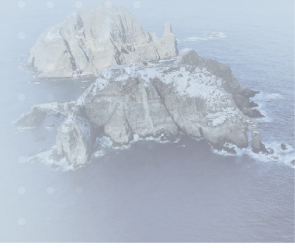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4. 필리핀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부분 제출 요약 자료 중 ‘필리핀의 지리적 환경(그림1)’



그림 출처:
CLCS
홈페이지(2024.
7.12.)

※ 위 그림 내 명칭은 필리핀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부분 제출문 내 명칭³⁾을 번역함

- 2) 제76조 8항: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따라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 3) 필리핀이 칼라얀 군도(Kapuluan ng Kalayaan)로 표기한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중국, 대만,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현재 각각 섬의 일부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중국과 대만은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은 '뜨엉사 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스프래틀리 군도(Kepulauan Spratly-말레이어)로 부른다.



필리핀 부분 제출문 주요 내용

필리핀이 제출한 팔라완 지역은 동쪽으로 필리핀해와 태평양, 서쪽으로 서필리핀해와 남중국해, 북쪽으로 바시(Bashi) 해협이 있고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셀레베스해(Celebes Sea)로 둘러싸여 있다. 필리핀은 수로, 지질학, 지구물리학 및 구조론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서팔라완지역에 팔라완 본토 및 칼라안 섬 군집, 팔라완-민도로(Palawan-Mindoro) 소대륙⁴⁾을 식별했음을 부분 제출문을 통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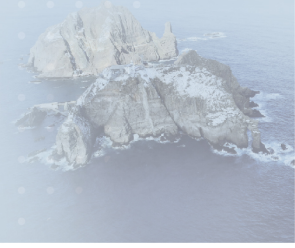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필리핀은 위원회에 본 부분 제출문의 영역과 중복될 수 있는 CLCS 커버 영역에 제출된 2009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공동 제출문서, 북부 지역의 2009년 베트남 제출물, 2019년 말레이시아 제출문서는 UNCLOS 제76조에 기초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2016년 남중국해 중재 본안 판정에서 확인된 원칙과 일치함을 언급했다. 또한 서팔라완 지역의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한계 설정이 남중국해의 만조 시 영해 한계에 따른 미래의 경계 설정을 침해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필리핀은 대륙붕 과학조사를 통해 대륙붕은 팔라완 본토와 보르네오 북부 기선에서 200해리 이상 확장되며, 이들 대륙과의 지형학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서팔라완 대륙붕 한계를 설정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필리핀의 대륙붕 외측 한계 결정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5조에 따라 서부 팔라완 지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 한계를 결정했다.

- ① 부속물 시험: 연안국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 선 중 어느 하나로 대륙변계의 바깥 끝을 정한다.(제75조 4항)
- ② 대륙사면 끝 + 60해리 공식: 빨간색, 흰색 점선으로 표시(제75조 4항)
- ③ 1% 퇴적물 두께 공식: 서팔라완지역 퇴적 두께 데이터가 부적절하여 대륙붕 경계 결정에 사용되지 않았다.
- ④ 350해리 제한선: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측지 정보를 수집했다.(제75조 5항)
- ⑤ 2,500미터 등심선(2,500미터 수심을 연결)으로 부터 100해리 제한선: 다중빔 수심측량을 통해 2,500개 기준점을 결정하였으며 2,500미터

4) 소대륙(Microcontinent)은 지구의 자연적 연장을 결정하는 지질학적, 지형학적 기초 단위이다. 대륙 지각의 일부가 대륙 열개 과정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해저의 대지로 해저 확장으로 대륙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해양지각에 둘러싸여 있으며, 독립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해양판과 함께 움직인다.



등심선으로부터 200해리 측지 정보를 수집했다.(제75조 5항)

- ⑥ 대륙붕의 바깥 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을 수 없으나 해양고원·융기·갯·해퇴 및 해저돌출부와 같은 대륙변계의 자연적 구성 요소인 해저 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76조 6항)

그림 5. 필리핀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부분 제출 요약 자료 중 '서팔라완지역에서 대륙변계의 바깥쪽 가장자리(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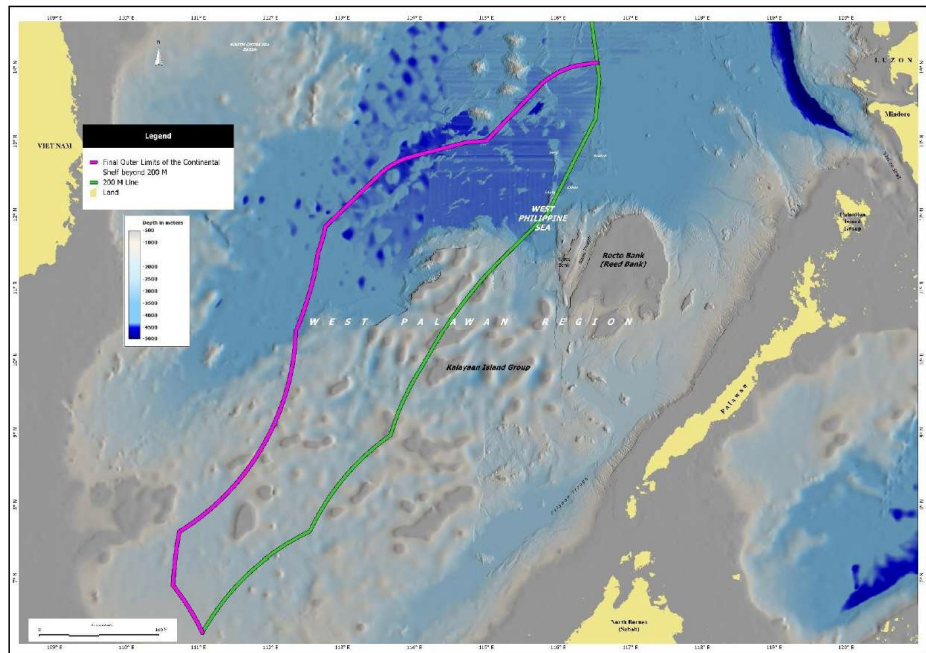


그림 출처: CLCS 홈페이지(2024.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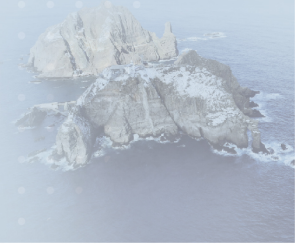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자주 실선: 필리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서팔라완지역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 한계선

*초록 실선: 필리핀 군도기선으로부터 200해리선

필리핀 부분 제출에 대한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의견 제출

필리핀 부분 제출에 대해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6월 18일, 6월 27일 의견을 제출했다. 중국은 위원회에 중국의 남중국해 및 인접 해역에 대한 명백한 주권과 관련 수역,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향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필리핀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음을 주장했다. 필리핀의 부분 제출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 규칙 부속서 I 5) 제5조(a)에 따라

5) 부속서 I (대항국 또는 인접 연안국 간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해결되지 않은 영토 또는 해양 분쟁의 경우 제출) 5. (a) 영토 또는 해양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는 분쟁 관련 국가의 제출을 심의하거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분쟁 당사자인 모든 국가의 사전 동의를 받아 분쟁 지역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제출을 고려할 수 있다.



필리핀의 부분 제출을 심의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필리핀의 부분 제출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사바주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명백한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대표부는 2009년 8월 21일자 유엔 사무총장 HA 41/09와 2020년 8월 27일자 HA 30/20 각각에 대한 메모를 상기시켜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의 말레이시아 사바주(the Malaysian state of Sabah)에 대한 주장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필리핀이 말레이시아 사바주에 대한 법적 소유권과 주권을 갖고 있다는 필리핀의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사바주는 말레이시아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1963년 9월 16일 말레이시아 연방이 설립된 이후 UN과 국제사회에서 말레이시아의 일부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필리핀의 사바에 대한 주권 주장은 1963년 사바 주민들의 합법적인 자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하는 전 세계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사바에 대한 필리핀의 주장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필리핀의 부분 제출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행위라고 비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위원회 절차 규칙 부속서 I 관련 조항에 따라 필리핀의 부분 제출을 심의 및 자격 부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의 필리핀 부분 제출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중양해역(VNM-C)에 대한 제출문서의 주요내용

베트남은 7월 17일 필리핀 부분 제출에 대한 의견 제출함과 동시에 위원회에 중부해역(VNM-C)에 대한 대륙붕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 베트남은 필리핀의 부분 제출 해역의 일부가 베트남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대륙붕을 침범하고 있어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수역은 이미 2009년에 위원회에 제출한 남중국해 동남부 해역 및 베트남 북부해역과 중첩되고, 이번에 제출한 베트남 중부해역과 중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⁶⁾

6) 남중국해 동남부 해역에 관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공동 제출(제출일: 2009.5.6., CLCS/64), 베트남 북부해역에 관한 베트남의 부분 제출(제출일: 2009.5.7., CLCS/64), 베트남 중부해역에 관한 베트남의 부분 제출(VNM-C)(제출일: 2024.7.17.), 그러나 2009년 제출 2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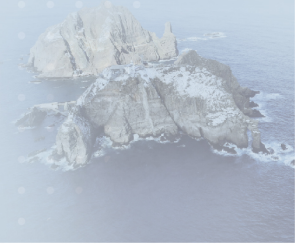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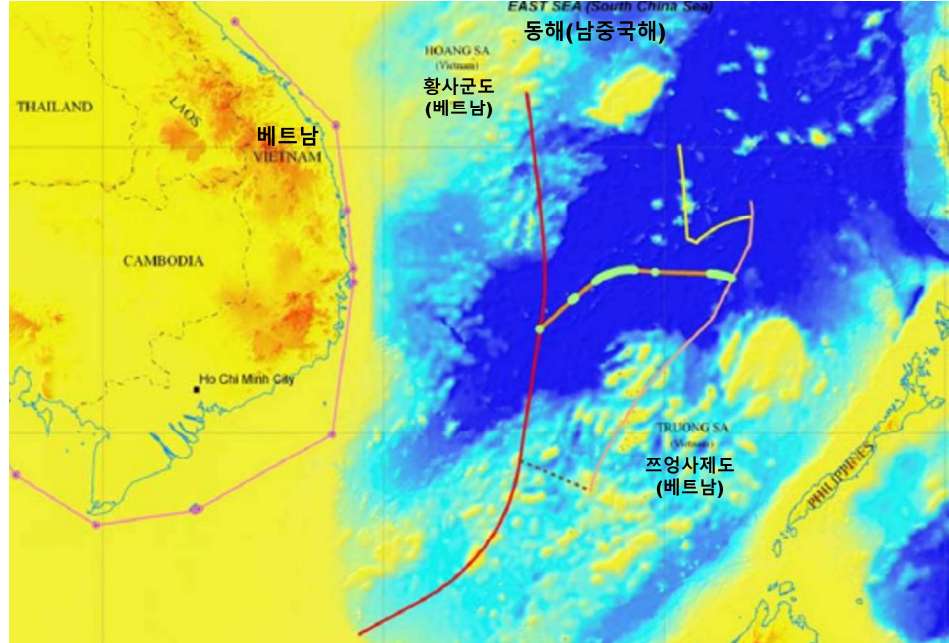


그림 6. 베트남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중부해역(VNM-C)에 대한 대륙붕 한계 정보



※ 위 그림 내 명칭은 베트남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부분 제출문 내 명칭(가)을 번역함
 *빨간 실선: 베트남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선, *주황 실선: 고정점 연결 직선,
 *초록 실선: 대륙사면 끝 + 60해리 고정점

그림 출처: CLCS
 홈페이지(2024.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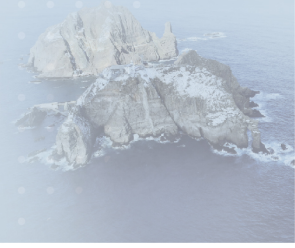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정책적 시사점

필리핀은 이미 2012년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로부터 필리핀해 동쪽 베넘 라이즈(Benham Rise)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⁸⁾ 그러나 권원 주장에 대한 중첩국이 없는 베넘 라이즈와 달리 이번 필리핀이 CLCS에 부분 제출한 ‘서팔라완지역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 한계선’ 내 해역에는 기존 베트남, 중국, 브루나이 등 이 실효 지배하거나 주권을 주장하는 암초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 특히 필리핀은 제출문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서술하였으나 필리핀이 주장하는 해역에는 이미 말레이시아와 분쟁 중인 사바주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⁹⁾이 광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중첩되는 수역으로 중국의 주장을 부인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7) 베트남이 호앙사 군도(Quần đảo Hoàng Sa)로 표기한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는 중국, 베트남,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지역으로 현재 중국이 군도 내 여러 섬을 실효 지배 중이다. 중국과 대만은 해당 지역을 서사군도(西沙群島)라고 부른다.

8) Philippines-in the Benham Rise region 위원회 결정문(CLCS/74) 참조

9)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이 요청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 결과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8개 환초 및 암초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부분 제출문에서 이미 베트남 등 남중국해를 접한 다른 연안국과 갈등을 예견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되었다고 표명했다. 필리핀의 이러한 행위는 미래 자원 확보¹⁰⁾를 위한 노력이지만 주요 해상운송로이자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주변 국가와 외교관계 긴장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당 해역에서 이웃 국가와 해양경계획정 협약을 맺은 사례¹¹⁾¹²⁾와 같이 국가 간 협의를 통한 대륙붕 경계를 확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 [1] 대륙붕한계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phl1_2024.htm(검색일: 2024.7.24.)
 [2] CLCS, 「A PARTIAL SUBMISSION OF DATA AND INFORMATION ON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N THE WEST PALAWAN REGION PURSUANT TO ARTICLE 76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3] CLCS, Communication dated 18 June 2024(China)
 [4] CLCS, Communication dated 27 June 2024(Malaysia)
 [5] CLCS, Communication dated 17 July 2024(Viet Nam)
 [6] AP 뉴스(2024.6.15.), 필리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광대한 대륙 해저에 대한 유엔의 확인 요청, <https://apnews.com/article/philippines-south-china-sea-continental-shelf-97da6db185774234bedba63c21e944d2>(검색일: 2024.7.12.)

- 10) 연안국에 확장된 대륙붕 권리가 인정되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최대 350해리(648km)에 달하는 광대한 대륙붕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권리와 모든 종류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권리를 가진다.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는 어류자원이 풍부하고 구아노, 석유, 천연가스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1) 국가 간 대륙붕 경계획정 협정 사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두 나라 사이의 대륙붕 경계에 관한 협정(1969년),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말라카 해협 북부와 안다만해에 있는 두 나라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1971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간의 말라카 해협 북부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197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2003년)
- 12) 국가 간 EEZ 경계획정 사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의 경계에 관한 협정(2014년)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 욱

중국 해경, '해경기구 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중국 해경국은 5월 15일 「해경법(海警法)」을 철저히 시행하고 해경의 해상 법 집행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해경기구 행정법 집행 절차 규정(海警机构行政执法程序规定)」을 제정하고 6월 15일부터 발효했다. 중국 「해경법」은 해경의 무기 사용을 합법화하여 강력한 법 집행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2021년 2월 1일 발효되었다.

「해경기구 행정법 집행 절차 규정」은 총 16장 28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총칙, △관할, △기피, △기간 및 송달, △현장 감독 검사, △입안, △조사 및 증거 수집, △청문 절차, △행정 처리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해상 법 집행의 세부적인 분야와 절차를 포괄하며, 해경 기관이 행정법을 집행하는 데 기본 규범이 된다. 특히, '기간 및 송달' 규정에는 "(중국어) 관할해역으로 간주하는 해역에서 출입국 관리 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단체나 선박에 대해서, 복잡한 사안의 경우 조사 및 구금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목을 끌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장기간 구금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외교적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림 7. 중국의 「해경기구 행정법 집행 절차 규정」

海警机构行政执法程序规定	
(2024年5月15日审议通过, 自2024年6月15日起施行)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九节 办案协作
第二章 管 辖	第八章 听证程序
第三章 回 避	第一节 一般规定
第四章 期间与送达	第二节 听证人员和听证参加人
第五章 现场监督检查	第三节 听证的告知、申请和受理
第一节 一般规定	第四节 听证的举行
第二节 现场监督检查措施	第九章 行政处理决定
第六章 立 案	第一节 行政处罚的适用
第七章 调查取证	第二节 行政处理决定
第一节 一般规定	第十章 简易程序和快速办理
第二节 询 问	第一节 简易程序
第三节 勘验(查)、检查	第二节 快速办理
第四节 鉴 定	第十一章 治安调解
第五节 辨 认	第十二章 涉案财物管理
第六节 查 询	第十三章 执 行
第七节 抽样取证	第一节 一般规定
第八节 行政强制措施和其他强制性措施	第二节 罚款的执行
	第三节 拘留的执行
	第四节 其他处理决定的执行
	第十四章 涉外行政案件的办理
	第十五章 案件终结
	第十六章 附 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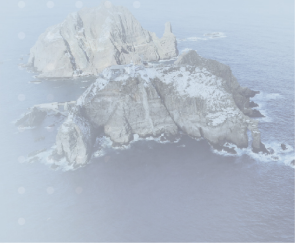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출처: 中国海警局



필리핀은 외무부 성명을 통해 중국의 「해경기구 행정법 집행 절차 규정」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 해경의 새로운 규정이 남중국해에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상황이 확대되어 우려스럽다”라며, 중국이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리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공해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는 중국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이 「해경기구 행정법 집행 절차 규정」과 같은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불법 행위가 없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응했다. 중국 해경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규정이 “외국 관련 행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기본 규칙을 확립하고, 강제 조치에 대한 적용 조건과 시행 절차를 규정하며, 행정법 집행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법 집행을 정보화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원의 리홍레이(李洪雷)·쑤난샹(孙南翔) 교수는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에서는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법률 제정이 건전한 해양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 출처 : [1] China Daily(2024.5.31.), China Coast Guard Procedures fully legitimate, <https://www.chinadaily.com.cn/a/202405/31/WS66590bd9a31082fc043ca1b9.html>
- [2] Reuters(2024.5.29.), Philippines president calls new China coast guard rules 'worrisome',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philippines-president-says-new-china-coast-guard-rules-worrisome-2024-05-29/>
- [3] 中国海警局(2024.5.15.), 中国海警局制定出台《海警机构行政执法程序规定》, https://www.ccg.gov.cn/2024/xxgk_0515/2459.html
- [4] 中国海警局, 海警机构行政执法程序规定, https://www.ccg.gov.cn/2024/xxgk_0515/P020240524367656949098.pdf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 지 혜

일본, ‘멸종위기’ 참고래 59마리 포획 계획 승인

지난 6월 11일 일본 수산청은 ‘2024년 상업 포경 계획’을 밝혔으며, 포경 대상 고래종을 기존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보리고래 등 3종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가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지정한 참고래를 새로 추가하고, 포획 개최 수는 최대 59마리로 결정했다. 나머지 3종의 연간 포획 쿼터는 밍크고래 142마리, 브라이드고래 150마리, 보리고래 25마리로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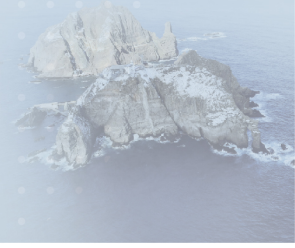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일본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상업적 포경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3개국 중 하나이며, 2019년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하고 30여 년 만에 상업적 포경을 재개하면서 국제적 보호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림 8. 참고래



사진 출처: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원유 및 석유 제품의 등장과 소고기 등 다른 고기 종류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고래기름과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급감했다. 일본에서도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식량 부족으로 고래 고기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으나, 1962년 연간 평균 230,000톤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는 연간



1,000~2,000톤 수준으로 거의 미미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포경산업이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식량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내세워왔다. 일본 내에서는 특히 젊은 층의 고래 고기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학교 급식으로 배급하고, 고래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고래고기의 가격이 높아 주로 고급 요리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도센파쿠라는 일본 포경업체가 70년 만에 노후선을 대체했는데, 국제사회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패소 이후 5년 만에 다시 남극해에서의 연구목적의 포경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그림 9. 일본 포경업체 교도센파쿠의 신규 모선 '칸게이 마루'호



사진 출처: CNN

일본이 이번 포경 계획에서 새로 포획 대상으로 추가한 참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지정한 고래종이며, 참고래에 대한 국내 시장이 없는 아이슬란드가 그동안 이를 일본으로 전량 수출해왔다. 하지만, 상업적 어업을 강력히 옹호하던 아이슬란드는 고래 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 높은 운영 비용, 경제적 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년까지 포경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남획으로 고래가 거의 멸종될 위기에 처하자 IWC는 1986년 고래 개체 수가 회복될 때까지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연구 목적'으로 매년 남극에서 적은 수의 고래를 잡는 것은 허용되어 왔으며, 혼획의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아닌 고래종에 한하여 유통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 고래잡이 어선들이 남극해 등지에서 이를 악용하자 2010년 호주가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당시 호주는 일본의 대규모 포경이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및 기타 해양포유류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이 고래를 살상하고 포획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발급한 모든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2018년 일본은 IWC가 상업적 포경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으나, 해당 표결이 부결되고, 고래를 영구히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은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이 채택되면서 일본은 국제포경규제협약(ICRW)과 IWC를 탈퇴했다.

앞서 일본은 국제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2015년 해양자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CITES상 무역규제를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포경 활동을 공해에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등 관할권 내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법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여전히 국제법상 협력의 의무와 월경성 EIA를 준비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나, 일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유엔해양법협약 제65조와 제120조에 따르면 공해 또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각국은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고래류의 경우 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은 상업 포경과 관련하여 “적절한 국제기구”로서 IWC와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협력에는 데이터 공유와 IWC의 과학위원회로부터 포경계획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MOX Plant 사건과 Land Reclamation 사건에서 데이터 교환을 협력의 의무의 한 부분으로 요구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국제 재판소에서 협력의 의무가 국제관습법 또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근본적인 원칙으로든 타 국가들의 권리에 대해 타당한 고려(due regard)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참고래의 이동범위 국가에는 대한민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의 계획은 이들 국가들의 해역 내 참고래 보존 상태를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을 특히 고려해야 하고, 동반되는 통보 및 협의 의무와 함께 월경성 EIA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월경성 EIA를 수행하거나 북태평양 참고래 범위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포경계획에 대해 IWC 과학위원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받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개최된 IWC 과학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경 계획을 숨겼으며 비난을 사고 있다. 일본이 포경 쿼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IWC의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고 있으며, IWC에서는 최근 자원개체수 추정 자료가 없는 경우 어획량을 0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북태평양 참고래의 개체수에 대한 추정 자료가 없으므로 IWC 과학위원회는 일본의 계획을 지적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이 협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IWC 회원 중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은 일본이 협력해야 할 의무와 월경성 EIA를 준비해야 할 관련 의무 준수를 강제하도록 유엔해양법협약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 강제절차 조항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출처 : [1] CNN, 2024년 6월 4일, Japan is determined to keep hunting whales. And it has a brand new 'mothership'.
[2] EJIL Talk, 2024년 6월 26일, "Japan Expands its Whale Hunt to include Fin Whales and Violates its Duty to Cooperate."
[3] The Guardian, 2024년 5월 2일, "The vast new whaling 'mother ship' that Japan hopes will revive a shrinking industry"
[4] 윤영민, 남극해 포경 사건에 대한 ICJ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해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해사법학회, 2020.11.



3개월 내 행사계획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 2024년 6월 10일 ~ 6월 14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검토, 국제해양법재판소 예산 사항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2명 선출

국제법평론회 하계학술대회 | 2024년 6월 19일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요 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해양법, 국제해양법상 주의의무와 잔존권리의 재조명

로도스 아카데미 | 2024년 6월 23일 ~ 7월 12일 / 그리스 로도스섬

- 주요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 현안 관련 강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부간회의 | 2024년 6월 24일 ~ 6월 26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 논의

제75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 2024년 7월 1일 ~ 8월 2일 / 제네바

- 주요 내용 Bogdan Aurescu(루마니아) 위원 사임에 따른 신규 위원 선출, 국제법위원회 창립 75주년 기념행사, '국가 책임에 관한 국가 승계', '국제법과 관련된 해수면 상승', '해상에서의 해적 행위 및 무장 강도의 예방 및 억제' 등 보고서 검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고위급 정치 포럼(ECOSOC) | 2024년 7월 8일 ~ 7월 18일 / 뉴욕

- 주요 내용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검토 및 글로벌 차원 후속 조치 논의

제61차 대륙붕한계위원회 | 2024년 7월 8일 ~ 8월 23일 / 뉴욕

- 주요 내용 신규 선출된 위원회 위원의 선언, 소위원회 및 기타 보조기관에 신규 위원 임명, 부분 수정안 검토(모리셔스, 팔라우, 포르투갈, 스페인, 쿠바, 모잠비크 등 제출분), 절차 규칙 개정,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등 검토

국제법평론회 국제법 캠프 | 2024년 7월 18일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요 내용 신기술과 인권 : 국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해양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제해양법